

「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 
관한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원섭, 김춘남,  
소진혁 의원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정 지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 
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6조)

-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(안 제7조 ~제8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호
 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, 제3조제4호
 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문제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작물의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과 농업의 작물 전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할 수 있게 하였음.
- 안 제6조에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관련부서에서는 농업인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충실히 하고,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·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